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21일, 한민수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 11. 20.)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4. 12. 26.)

상정/축조심사/의결(원안가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 12. 27.)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한민수의원)

현행법은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감청설비 인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사유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가 취소의 경우 국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침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등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사유 및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신설 및 제6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 개정안은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 사유 및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는 국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봄.

4. 대체토론의 요지

특이사항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현위원)

원안의결함.

6. 심사결과

원안의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과정을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監聽設備에 대한 認可機關과 認可節次)”를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및 인가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고, 그 뜻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2.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⑥ 그 밖에 인가 및 인가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0條(監聽設備에 대한 認可機關과 認可節次) ① ~ ④ (생략) <신 설> ⑤ 第1項의 認可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및 인가의 취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고, 그 뜻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2.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⑥ 그 밖에 인가 및 인가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